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81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송기현 · 김한규 · 박정하
유상범 · 윤종균 · 윤준병
이양수 · 이연희 · 이철규
임미애 · 한기호 · 허영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면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심의·조정 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정

책 조정 기능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11조제2항).

나. 강원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1조제5항).

법률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30명”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u>30명</u>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 <u>35명</u>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5명</u>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⑤ ----- ----- <u>30명</u> ----- -----.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